

제2024-113호 2024년 12월 27일(금)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규 칙

○ 여수시 규칙	제848호	여수시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1
○ 여수시 규칙	제849호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4
○ 여수시 규칙	제850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7
○ 여수시 규칙	제851호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4
○ 여수시 규칙	제852호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0

조 례

○ 여수시 조례	제2165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 여수시 조례	제2166호	여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40
○ 여수시 조례	제2167호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44
○ 여수시 조례	제2168호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1
○ 여수시 조례	제2169호	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 여수시 조례	제2170호	여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58
○ 여수시 조례	제2171호	여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64
○ 여수시 조례	제2172호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69
○ 여수시 조례	제2173호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75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4년 제12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 월 27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규칙 제848호

붙임 여수시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규칙 제848호

여수시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중 “별표1”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년 제12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 월 29 일

여 수 시 장 김기현



여수시 규칙 제849호

붙임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타 규정 개정에 따라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조제2항제3호,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의 국·소장을 국·소·단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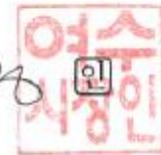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 부시장, 국·소장, 담당관·과·소장, 팀장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p> <p>② 부시장의 전결사항 3. 국·소장, 담당관·과·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p> <p>③ 국·소장의 전결사항 2.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p> <p>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안전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p> <p>②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 다른 국·소장 또는 담당관·과·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p> <p>[별표] 사무전결처리 사항</p>	<p>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 부시장, 국·소·단장, 담당관·과·소장, 팀장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p> <p>② 부시장의 전결사항 3. 국·소·단장, 담당관·과·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p> <p>③ 국·소·단장의 전결사항 2. 국·소·단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p> <p>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안전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p> <p>②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다른 국·소·단장 또는 담당관·과·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p> <p>[별표] 사무전결처리 사항(개정)</p>

2024년 제12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 월 27 일

여 수 시 장 김기남



여수시 규칙 제850호

붙임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규칙 제850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8.12.31., 2009.3.16., 2009.6.8., 2009.10.30., 2009.12.31., 2010.3.12., 2010.12.1., 2011.1.17., 2011.9.23., 2011.12.31., 2012.8.10., 2013.1.10., 2013.8.14., 2014.1.13., 2014.2.21., 2014.6.30., 2015.1.15., 2015.6.5., 2016.2.1., 2016.4.22., 2016.8.1., 2016.12.30., 2017.7.3., 2017.12.29., 2018.8.1., 2019.1.2., 2020.1.2., 2020.7.10., 2020.10.12., 2021.1.4., 2021.4.26., 2022.1.3., 2022.7.7., 2022.12.30., 2023.12.29. 2024. 7. 3.)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총 계	1,936	1,107	45	220	91	17	31	129	296
정 무 직 계	1	1							
시 장	1	1							
일 반 직 계	1,887	1,095	45	183	91	17	31	129	296
3 급	1	1							
4 급	13	9	1	2	1				
5 급	86	46	3	6	3	1	1	6	20
6 급	441	274	11	46	16	4	8	37	45
7 급	484	289	24	45	22	5	6	25	68
8 급	512	277	5	62	27	5	9	31	96
9 급	349	198	1	22	22	2	7	30	67
전문경력관(나군)계	1	1							
화 생 방 관 리 원	1	1							
별 정 직 계	2	2							
비 서 요 원 (6 급 상 당)	1	1							
비 서 요 원 (7 급 상 당)	1	1							
연 구 직 계	12	9		3					
학 예 연 구 사	7	7							
기 록 연 구 사	1	1							
농 업 연 구 사	3			3					
해 양 수 산 연 구 사	1	1							
지 도 직 계	34			34					
농 촌 지 도 관	2			2					
농 촌 지 도 사	32			32					

* 일반직과 별정·연구·지도직에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

[별표 2] (개정 2008.12.31., 2009.3.16., 2009.6.8., 2009.10.30., 2009.12.31., 2010.3.12., 2010.12.1., 2011.1.17., 2011.9.23., 2011.12.31., 2012.8.10., 2013.1.10., 2013.8.14., 2014.1.13., 2014.2.21., 2014.6.30., 2015.1.15., 2015.6.5., 2016.2.1., 2016.4.22., 2016.8.1., 2016.12.30., 2017.7.3., 2017.12.29., 2018.8.1., 2019.1.2., 2020.1.2., 2020.7.10., 2020.10.12., 2021.1.4., 2021.4.26., 2022.1.3., 2022.7.7., 2022.12.30., 2023.12.29. 2024. 7. 3.)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제2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총 계	1,936	1,107	45	220	91	17	31	129	296
정무직계	1	1							
시장	1	1							
일반직계	1,887	1,095	45	183	91	17	31	129	296
3급 계	1	1							
행정	1	1							
4급 계	13	9	1	2	1				
행정	6	5	1						
기술	2	1		1					
행정+기술	4	3			1				
행정+기술+농촌지도	1			1					
5급 계	86	46	3	6	3	1	1	6	20
행정	17	14	2		1				
해양수산	1	1							
시설	3	3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시설	10	9				1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행정+공업+환경	3	3							
행정+공업+시설	3	2			1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농촌지도	2			2					
행정+해양수산+시설	3	2	1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사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5								5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1	
행정+사회복지+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녹지+시설	2								2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식품위생+시설	1								1
행정+사회복지+간호+시설	2								2
행정+사서+공업+시설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환경+방송통신	1								1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2							1	1
행정+농업+환경+시설	1							1	
행정+녹지+해양수산+보건	1							1	
행정+해양수산+보건+시설	1							1	
행정+보건+공업+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행정+보건+의무+간호	1			1					
행정+의료기술+시설+방송통신	1								1
보건+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	1			1					
6급 계	441	274	11	46	16	4	8	37	45
행정	68	60	5		2	1			
세무	7	7							
사회복지	6	6							
공업	1	1							
해양수산	6	6							
보건진료	6			6					
환경	3	3							
시설	24	20			1	3			
운전	6	6							
기계운영	1				1				
행정+세무	10	10							
행정+전산	5	5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사 무 국	직 속 기 관	사 업 소	출 장 소	읍	면	동
행정+사회복지	16	16							
행정+사서	7	7							
행정+공업	6	6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3	3							
행정+해양수산	4	4							
행정+환경	10	10							
행정+시설	23	23							
행정+사무운영	5	4			1				
전산+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3	3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4	3			1				
공업+화공운영	1	1							
녹지+시설	2	2							
해양수산+환경	1	1							
보건+식품위생	3			3					
보건+간호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전산+환경	1	1							
행정+전산+시설	2	2							
행정+전산+공업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사서+위생	1	1							
행정+사서+기록연구사	1	1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공업+시설	7	6			1				
행정+공업+방송통신	3	3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농업+농촌지도	3			3					
행정+녹지+시설	5	5							
행정+해양수산+환경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5	5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사 무 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행정+보건+식품위생	3	1		2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사무운영	1	1							
행정+시설+학예연구사	2	2							
세무+전산+시설관리	1				1				
공업+전기운영+기계운영	5	2			3				
공업+시설+시설관리	1	1							
전산+공업+방송통신	1	1							
농업+녹지+시설	2	2							
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공업+환경+시설	2				2				
농업+수목+농촌지도	2			2					
농업+농업연구+농촌지도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9			9					
보건+간호+보건진료	5			5					
행정+세무+전산+사회복지	14						2	6	6
행정+세무+전산+농업	4						1	3	
행정+세무+전산+해양수산	1							1	
행정+세무+전산+식품위생	1							1	
행정+세무+전산+방송통신	3							3	
행정+세무+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세무+농업+해양수산	1							1	
행정+세무+보건+간호	1							1	
행정+전산+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전산+사회복지+방송통신	2		2						
행정+전산+사서+기록연구사	1	1							
행정+전산+공업+보건	1							1	
행정+전산+공업+시설	5	5							
행정+전산+보건+식품위생	1	1							
행정+시설+해양수산+사무운영	3		3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사 무 국	직 속 기 관	사 업 소	출 장 소	읍	면	동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공업+보건	1								1
행정+사회복지+공업+간호	3								3
행정+사회복지+공업+환경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1
행정+사회복지+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녹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	3	2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31						1	7	23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1								1
행정+사서+공업+환경	1	1							
행정+사서+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농업+녹지	1							1	
행정+공업+농업+해양수산	2							2	
행정+공업+녹지+해양수산	1								1
행정+공업+녹지+시설	6	1					1	4	
행정+공업+환경+시설	4	2			2				
행정+공업+시설+학예연구소	2	2							
행정+공업+방재안전+방송통신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2	
행정+농업+녹지+농촌지도	1			1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3						1	2	
행정+농업+보건+식품위생	1			1					
행정+해양수산+녹지+환경	1							1	
행정+해양수산+식품위생+의료기술	2								2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3			3					
행정+보건+환경+시설	1							1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사 무 국	직 속 기 관	사 업 소	출 장 소	읍	면	동
전산+공업+시설+방송통신	1	1							
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간호	2			2					
공업+보건+간호+환경	1	1							
공업+보건+시설+방재안전	1	1							
7급 계	484	289	24	45	22	5	6	25	68
행정	117	62	18		2	1	2	5	27
세무	6	6							
전산	5	5							
사회복지	39	16						5	18
사서	1	1							
공업	14	11			3				
해양수산	11	11							
환경	6	6							
시설	40	31		1	3	4	1		
방재안전	1	1							
운전	15	10	2	3					
보건	4			4					
의료기술	2			2					
보건진료	5			5					
위생	-								
간호조무	1			1					
전기운영	-								
기계운영	-								
행정+세무	21	18						2	1
행정+전산	5	5							
행정+사회복지	25	9						1	15
행정+사서	7	7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10	1		1				5	3
행정+녹지	5	4					1		
행정+해양수산	8	5					1	2	
행정+환경	5	4							1
행정+시설	16	16							
전산+시설	1	1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사 무 회 국	직 속 기 관	사 업 소	출 장 소	읍	면	동
전산+방송통신	2	2							
사회복지+시설	1	1							
공업+환경	4	2			2				
공업+시설	3	1		1	1				
공업+방송통신	1	1							
공업+시설관리	2				2				
공업+전기운영	2	2							
공업+기계운영	1				1				
농업+녹지	2	2							
농업+수의	1			1					
농업+해양수산	1							1	
농업+농촌지도	2			2					
해양수산+환경	1	1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보건진료	1			1					
식품위생+의료기술	1			1					
간호+보건진료	1			1					
방재안전+시설관리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사서	1						1		
행정+세무+해양수산	1							1	
행정+전산+공업	1	1							
행정+사회복지+사무운영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4	2	2						
행정+사서+학예연구사	2	2							
행정+사서+기록연구사	2	2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9	7			2				
행정+농업+해양수산	-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농업+농촌지도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해양수산+환경	1	1							
행정+보건+간호	-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사 무 국	직 속 기 관	사 업 소	출 장 소	읍	면	동
행정+시설+학예연구사	1	1							
행정+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	-								
전산+공업+방송통신	1	1							
전산+농업+녹지	1	1							
사회복지+공업+시설	1	1							
공업+녹지+시설	5	5							
공업+환경+시설	1				1				
공업+환경+방재안전	2	2							
공업+시설+방재안전	1	1							
공업+시설+방송통신	1	1							
공업+시설+시설관리	1							1	
농업+녹지+시설	2	2							
농업+수의+농촌지도	2			2					
보건+식품위생+간호	1			1					
보건+식품위생+보건진료	1			1					
보건+식품위생+시설	1			1					
보건+식품위생+위생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8			8					
행정+세무+공업+시설	1	1							
행정+전산+방송통신+사무운영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4	2		1					1
행정+공업+녹지+시설	1	1							
행정+공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3	1			2				
행정+농업+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식품위생+환경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사회복지+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1								1
공업+보건+간호+시설	1	1							
공업+보건+간호+방재안전	1	1							
공업+환경+시설+시설관리	1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식품위생+간호+시설	1	1							
8급 계	512	277	5	62	27	5	9	31	96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사 회국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행정	79	54	3		2	2			18
전산	1	1							
사회복지	38	13					1	3	21
공업	4	4							
농업	1							1	
해양수산	5	5							
보건	4			4					
의료기술	4			4					
간호	14			6			1	5	2
보건진료	9			9					
환경	4	4							
시설	19	16				3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위생	-								
운전	13	7		4	2				
통신운영	-								
기계운영	-								
행정+세무	22	19			2			1	
행정+전산	7	6			1				
행정+사회복지	27	5					1	5	16
행정+사서	9	8							1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6						3	2	1
행정+녹지	3	1						1	1
행정+해양수산	10	7						2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16	15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사무운영	1	1							
전산+시설	1	1							
전산+공업	1	1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사 무 회 국	직 속 기 관	사 업 소	출 장 소	읍	면	동
전산+방송통신	2	2							
사회복지+간호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5	4		1					
공업+방재안전	1	1							
공업+방송통신	1	1							
공업+기계운영	1				1				
농업+농지	2	2							
농업+해양수산	1							1	
농업+농촌지도	5			5					
해양수산+환경	1	1							
시설+토목운영	2	2							
방송통신+통신운영	1	1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보건+간호	15			6					9
보건+보건진료	2			2					
식품위생+위생	1						1		
의료기술+간호	9								9
간호+보건진료	1			1					
방재안전+시설관리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전산+공업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전산+방재안전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5	3	2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	1								1
행정+사서+학예연구사	4	4							
행정+사서+기록연구사	2	2							
행정+공업+환경	5	5							
행정+공업+시설	39	28			7			4	
행정+농업+농촌지도	2			2					
행정+해양수산+환경	5	5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보건+식품위생	-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사 무 회 국	직 속 기 관	사 업 소	출 장 소	읍	면	동
행정+시설+방재안전	2	2							
전산+농업+녹지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공업+녹지+시설	4	4							
공업+환경+시설	7	3			4				
공업+환경+방재안전	1	1							
공업+시설+시설관리	1	1							
공업+전기운영+기계운영	2	1			1				
농업+수익+농촌지도	1			1					
농업+농업연구사+농촌지도사	-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8			8					
보건+간호+보건진료	3			3					
행정+세무+전산+사서	1							1	
행정+세무+사회복지+공업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4						2		12
행정+공업+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학예연구사	1	1							
행정+전산+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농업+식품위생+간호	1			1					
행정+보건+식품위생+위생	1			1					
행정+보건+식품위생+간호	2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3	3							
전산+공업+시설+방송통신	2	2							
사회복지+보건+식품위생+간호	4							2	2
공업+보건+간호+환경	3	3							
공업+환경+시설+기계운영	1				1				
농업+녹지+해양수산+시설	2	2							
농업+식품위생+간호+농촌지도	1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	4	3						1	
보건+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	1			1					
9급 계	349	198	1	22	22	2	7	30	67
행정	43	31				1	1		10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사 무 국	직 속 기 관	사 업 소	출 장 소	읍	면	동
사회복지	33	5					1	5	22
사서	1	1							
공업	1	1							
농업	-								
녹지	1	1							
해양수산	8	8							
보건	-								
식품위생	-								
환경	1	1							
시설	12	11				1			
방송통신	2	2							
위생	1							1	
운전	14	8		2			1	3	
토목운영	-								
기계운영	-								
행정+세무	18	15						3	
행정+전산	-								
행정+사회복지	36	9					1	10	16
행정+사서	13	11							2
행정+공업	6	6							
행정+농업	6	1		3			1		1
행정+녹지	4	4							
행정+해양수산	6	6							
행정+식품위생	-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13	13							
행정+사무운영	8	4						1	3
전산+사서	1	1							
전산+방송통신	-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								
공업+방재안전	1	1							
공업+기계운영	4	3				1			
공업+시설관리	2					2			
공업+전기운영	1					1			
농업+보건	1			1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사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농업+식품위생	-								
보건+의료기술	10			9				1	
식품위생+의료기술	1			1					
시설+방재안전	1	1							
시설+토목운영	2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해양수산	1	1							
행정+전산+공업	1	1							
행정+전산+농업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6	4	1		1				
행정+사회복지+사서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1					1
행정+사회복지+사무운영	1	1							
행정+사서+사무운영	1	1							
행정+공업+녹지	1	1							
행정+공업+환경	6	6							
행정+공업+시설	27	20			6			1	
행정+공업+방재안전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해양수산+환경	2	2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식품위생+의료기술	1			1					
전산+공업+방송통신	1	1							
사회복지+보건+식품위생	2							1	1
공업+환경+시설	7				7				
공업+환경+방재안전	4	4							
공업+환경+기계운영	1	1							
공업+시설+방송통신	1	1							
공업+시설+시설관리	-								
농업+식품위생+위생	2			2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환경	1			1					
행정+전산+공업+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식품위생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	2	1					1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국	직 속 기 관	사 업 소	출 장 소	읍	면	동
행정+공업+해양수산+시설	-								
행정+농업+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2							1	1
사회복지+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7								7
공업+녹지+시설+기계운영	1	1							
공업+환경+시설+시설관리	1				1				
공업+환경+시설+기계운영	1				1				
농업+녹지+해양수산+시설	1	1							
농업+식품위생+간호+농촌지도	-								
전문경력관(나군)계	1	1							
화생방관리원	1	1							
별정직계	2	2							
비서요원(6급상당)	1	1							
비서요원(7급상당)	1	1							
연구직계	12	9		3					
학예연구사	7	7							
기록연구사	1	1							
농업연구사	3			3					
해양수산연구사	1	1							
지도직계	34			34					
농촌지도관	2			2					
농촌지도사	32			32					

2024년 제12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7일

여 수 시 장

조기현



여수시 규칙 제851호

붙임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여수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각 목적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본청 국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단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가.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 과장, 사업소·출장소장

가. 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3과 같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4와 같다.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13조제2호에 따라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인터넷 구매를 포함한다)에는 일반 지출 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여수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 이라 한다) <u>제21조제1항</u>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각 목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 ----- ----- ----- <u>제11조</u>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u>제22조제1항</u>에 따라 회계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3과 같다.</p> <p>② 훈령 <u>제22조제2항</u>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4와 같다.</p>	<p>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 <u>제12조</u> ----- ----- ----- -----</p> <p>② --<u>제12조</u> ----- ----- -----</p>
<p>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u>제23조의2제3호</u>에 따라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인터넷 구매를 포함한다)에는 일반 지출 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p>	<p>제7조(지출의 절차)---<u>제13조제2호</u> ----- ----- ----- ----- -----</p>

현행	개정안
<p>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p> <p>② (생략)</p>	<p>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 제77조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p> <p>② (생략)</p>	<p>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 제105조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별표 1](개정안)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 청	지방의회	제1관서 (읍·면·동제외)	기타 관서· 임시관서	읍·면·동	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 계 책 입 관	행정안전국장					
징 수 관	행정안전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읍·면·동장	
분 입 징 수 관	세정과장, 징수과장, 세외수입 주관 담당관, 과의 장		세입담당과장			
재 무 관	행정안전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등의 경우 분입재무관)		읍·면·동장 (본청 일상경비등의 경우는 분입재무관)	
분 입 재 무 관	회계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등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과 제1관서 일상경비 등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소장
총 괄 채 권 관 리 관	기획경제국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채 권 관 리 관	소관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읍·면·동장	
총 괄 부 채 관 리 관	기획경제국장					
부 채 관 리 관	소관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총 괄 기 금 관 리 관	기획예산과장					
통 합 지 출 관	회계과장					
지 출 원	경리업무담당	의정(의사)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	읍·면·동의 지출업무담당(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등출납원)	
수 입 금 출 납 원	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 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 담당)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일 상 경 비 출 납 원	각 담당관·과 서무업무담당		각 과 서무업무담당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 담당(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 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등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총무업무담당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서무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자	총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2024년 제12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건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 월 27 일

여 수 시 장

2024/12/27



여수시 규칙 제852호

붙임 여수시 건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규칙 제852호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건인보관소) ① (생 략)</p> <p>② (생 략)</p> <p>③ (생 략)</p> <p>④ 대행법인 등이 타인 소유의 부지를 건인보관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토지등기부 등본</p> <p>2.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1통(임대차 계약용)</p> <p>3. 임대차 계약서 1통</p>	<p>제8조(건인보관소)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대행법인 등이 타인 소유의 부지를 건인보관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토지등기부 등본</p> <p><u>2.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1통(임대차 계약용)</u></p> <p>3. 임대차 계약서 1통</p>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 월 27 일

여 수 시 장  인



여수시 조례 제2165호

붙임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각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는 해당 재직기간 내에”를 “해당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최대 5회까지, 10년 이상이면”으로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제18조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사무지원 종사자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3을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조의3에 따른 휴무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제16항에 따른 간사 및 서기
2. 시장이 지정한 선거사무지원 종사자

⑪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제6항의 재직기간을 따른다. 이 경우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⑫ 시장은 근로자의 날(5월1일)이 있는 해당 월에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별표 4의 “일반”을 “일반직”으로 하고, “호봉 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호봉 또는 연봉제근무연수 확정 시 공무원 근무경력 외 인정되는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로 한다.

별표 5의 사망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일수란 “1”을 “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특별휴가) ① ~ ②(생 략)</p> <p><u>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한다.</u></p> <p><u>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 하며, 1일에 사용한 육아시간이 2시간 미만 이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u></p> <p><u>2.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 산함</u></p> <p><u>3.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 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한다.</u></p>	<p>제18조(특별휴가) ① ~ ②(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④ ~ ⑤(생 략)</p>	<p>④ ~ ⑤(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⑥ 공무원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각 재직기간(「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한다)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u>각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는 해당 재직기간 내에 최대 10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u></p> <p>1. <u>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u> 2. <u>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u> 3. <u>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u></p> <p>⑦ ~ ⑧ (생략)</p> <p>⑨ <u>제3항에 따른 육아시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할 때에는 일(日) 최소근무 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은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u></p>	<p>⑥ 공무원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각 재직기간(「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한다)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u>해당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최대 5회까지, 10년 이상이면 -----</u> -----.</p> <p>1. <u>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u> 2. <u>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u> 3. <u>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u> 4. <u>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u></p> <p>⑦ ~ ⑧ (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⑩ <u>시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u></p>	<p>⑩ <u>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p>

현행	개정안
<p>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 (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p> <p>⑪ <신 설></p> <p>⑫ <신 설></p> <p>[별표 4] <개정 2023. 12. 29.>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4조 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p> <p>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div>	<p>하는 선거사무지원 종사자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3을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조의3에 따른 휴무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p> <p>1.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제16항에 따른 간사 및 서기</p> <p>2. 시장이 지정한 선거사무지원 종사자</p> <p>⑪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제6항의 재직기간을 따른다. 이 경우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p> <p>⑫ 시장은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는 해당 월에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p> <p>[별표 4] <개정 2023. 12. 29.>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4조 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 또는 연봉제근무연수 확정 시 공무원 근무경력 외 인정되는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p> <p>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div>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8조제1항관련)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8조제1항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구 분	대 상	일수
사 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u>1</u> 일	사 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u>3</u> 일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 월 27 일

여 수 시 장 조기호



여수시 조례 제2166호

붙임 여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여수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피해주민”이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3. “화재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를 통해 일상에 조속히 복귀 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의 종류)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2.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
3. 심리회복 지원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관계 법령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다만, 지원받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4.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5.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화재피해지원금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1,000만원
2. 반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500만원
3. 부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복구업무 이행 주체에 따라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지급하고 건물주면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제6조(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 ① 시장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할 수 없게 된 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거처(숙박시설 등) 마련에 필요한 비용과 식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비용 등의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로 하고,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비와 식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심리회복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 신청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하여야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결정 등)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면·동장은 실거주여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피해규모 조사 결과서(이하 “조사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조사서를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순위에 따라 수령한다.

제11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 월 27 일

여 수 시 장 김기중



여수시 조례 제2167호

붙임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특수경력직 공무원 등 연가가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 각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는 해당 재직기간 내에 6회”를 “경우 해당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최대 5회까지 10년 이상이면 최대 10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⑨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사무지원 종사자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3을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조의3에 따른 휴무와 중복하여 사용 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제16항에 따른 간사 및 서기

2. 의장이 지정한 선거사무지원 종사자

⑩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제5항의 재직기간을 따른다. 이 경우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⑪ 의장은 근로자의 날(5월1일)이 있는 해당 월에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

를 줄 수 있다.

별표 3의 “일반”을 “일반직”으로 하고, “호봉 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호봉 또는 연봉제근무연수 확정 시 공무원 근무경력 외 인정되는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로 하고,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란 “2”를 “3”으로 한다.

별표 4의 사망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일수란 “1”을 “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 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p> <p>제14조(특별휴가) ①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0px;">②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1일에 사용한 육아시간이 2시간 미만이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p> <p style="padding-left: 20px;">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p> <p style="padding-left: 20px;">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p>	<p>제10조(특수경력직 공무원 등 연가가산) ----- -----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p> <p>제14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삭 제></p>

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은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⑨ 의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별표 3]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0조 관련)

- | |
|--|
|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
|--|

⑨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사무지원 종사자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3을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조의3에 따른 휴무와 중복하여 사용 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제16항에 따른 간사 및 서기
2. 의장이 지정한 선거사무지원 종사자

⑩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제5항의 재직기간을 따른다. 이 경우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⑪ 의장은 근로자의 날(5월1일)이 있는 해당 월에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0조 관련)

- | |
|---|
|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직공무원 등의 |
|---|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8조제1항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사 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일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 또는 연봉제근무연수 확정 시 공무원 근무경력 외 인정되는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4조제1항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사 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일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 월 27 일

여 수 시 장 *조기모*



여수시 조례 제2168호

붙임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없다”를 “없으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증빙자료를 첨부하여”를 “용역보고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여수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연구활동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위원회 회의)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 · ④ (생략)</p>	<p>제9조(위원회 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없으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연구단체 지원) ① ~ ③ (생략)</p> <p>④ ~ ⑥ 삭제</p> <p><신설></p>	<p>제10조(연구단체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⑦ <u>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u></p>
<p>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 6호 서식에 따라 매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12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p>	<p>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 ----- ----- ----- 용 <u>역보고서를</u> ----- -----.</p>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6월 15일까지로 한다.

② (생략)

<신설>

③ 연구활동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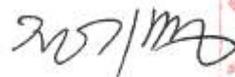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여수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 월 27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2169호

붙임 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169호

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를 “택배노동자, 학습지 교사, 배달노동자”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u>택배기사</u>, <u>학습지 교사</u>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p> <p>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쉽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p> <p>1. <u>토요일</u>, 「<u>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u>」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및 「<u>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u>」에 따른 근로자의 날</p> <p>2. (생략)</p> <p>② (생략)</p>	<p>제2조(정의) ----- ----- <u>택배노동자</u>, <u>학습지 교사</u>, <u>배달노동자</u> ----- ----- ----- ----- ----- -----.</p> <p>제4조(개관 및 휴관) ① ----- ----- -----.</p> <p>1. 「<u>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u>」----- ----- ----- -----</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 월 29 일

여 수 시 장 김기현



여수시 조례 제2170호

붙임 여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뜻한다.
4.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을 말한다.
6. “장애청소년”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의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 중·고등부 및 전공과 학생을 말한다.
7. “훈련장애인”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8. “근로장애인”이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여수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법
2.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계획
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종 발굴 등 우대 방안
4. 장애청소년에 대한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
5.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홍보
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7. 장애인 고용서비스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사·연구·평가를 위하여 과제를 선정하여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장애인, 사업주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장으로 한다.

제6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① 시장 및 시장이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및 법인은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시장 :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비율
2. 시장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및 법인 : 법 제28조의2에 따른 비율

② 시장은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을 현황을 조사하고, 그 실적이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률 준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① 시장은 제6조제1항과 관련하여 매년 장애인 고용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장애인 고용실적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 조성 등의 보호고용

제9조(민간위탁 사업자의 고용촉진) 시장은 시 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비율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
2.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3.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홍보
4.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2.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3.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4.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차량, 편의시설, 보조기기 등 지원
5. 훈련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수당의 지원
6. 근로장애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지원
7.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직업재활을 위한 인력의 지원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 비율을 고려한 보호작업장의 단계적인 확대 설치·운영
2. 보호작업장을 통하여 직무기능이 향상된 중증장애인이 발전적으로 전이할 수 있는 근로사업장의 설치·운영

제12조(장애청소년 직업재활) 시장은 장애청소년의 직업지도, 직업체험, 진로교육 등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및 구매
2.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또는 다수의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 장애인 인권교육 및 성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재활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보조금 관리)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관련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 월 27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171호

붙임 여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생활 균형”이란 개인과 가족의 다양한 삶의 형태에 맞추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 가정, 사회 전반의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을 말한다.
3.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친화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생활 균형 기본방향 및 목표
2. 일·생활 균형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돌봄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일·생활 균형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2.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일·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4.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민관협력 사업
5.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일·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조성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가족친화인증 확산) 시장은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하여 가족친화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족친화기업 등 지원) ① 시장은 가족친화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융자대상 선정 시 우대
2. 「여수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
3. 그 밖에 가족친화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가족친화제도 활성화 지원)

- ① 시장은 가족친화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지원 사업
2. 탄력적 근무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가족친화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업, 법인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일·생활균형위원회) ① 시장은 일·생활균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수시 일·생활균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일·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2.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추진실적 및 제도개선
3.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심의할 수 있다.

- ③ 그 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및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생활 균형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일·생활 균형에 기여한 기관·법인·단체·기업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 월 27 일

여 수 시 장

김기민



여수시 조례 제2172호

붙임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172호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사용료 등) “해수욕장 시설의 사용요금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를 “해수욕장 시설의 사용요금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로 한다.

제12조제1호(시설사용료 면제)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구성 및 임기)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을 “여수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여수기상대장”을 “여수기상관측소장”으로 한다.

별표 1 “해수욕장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고, 별표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는 별표 2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여수시 해수욕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별표 1)

해수욕장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방죽포 해수욕장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방죽마을 지선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308-3번지 일원)	
무술목 해수욕장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굴전마을 지선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71-7번지 일원)	
장 등 해수욕장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장등마을 지선 (여수시 화장면 장수리 61-1번지 일원)	
낭 도 해수욕장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여산마을 지선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573-6번지 일원)	
안 도 해수욕장	여수시 남면 안도리 안도마을 지선 (여수시 남면 안도리 255번지 일원)	
거문도(유림) 해수욕장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덕촌마을 지선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322-1번지 일원)	
만성리 해수욕장	여수시 만흥동 평촌마을 지선 (여수시 만흥동 49-12번지 일원)	
모사금 해수욕장	여수시 오천동 오천마을 지선 (여수시 오천동 908-11번지 일원)	
응천 친수공원 해수욕장	여수시 응천동 1692번지 일원	
사 도 해수욕장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사도마을 지선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210-11번지 일원)	
신 덕 해수욕장	여수시 삼일동 신덕리 신덕마을 지선 (여수시 신덕동 677번지 일원)	
서 도 해수욕장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서도마을 지선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75번지 일원)	
손 죽 해수욕장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손죽마을 지선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산1499번지 일원)	
대 풍 해수욕장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대동마을 지선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산2775번지 일원)	
정 강 해수욕장	여수시 삼산면 진막리 정강마을 지선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산1939-1번지 일원)	

[별표 2]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시설명	기준	구분	요금	비고
샤워장	1인	소인	2,000원	
		대인	3,000원	

※ 소인은 7세 이상 12세 이하, 대인은 13세 이상인 자로 한다.

[별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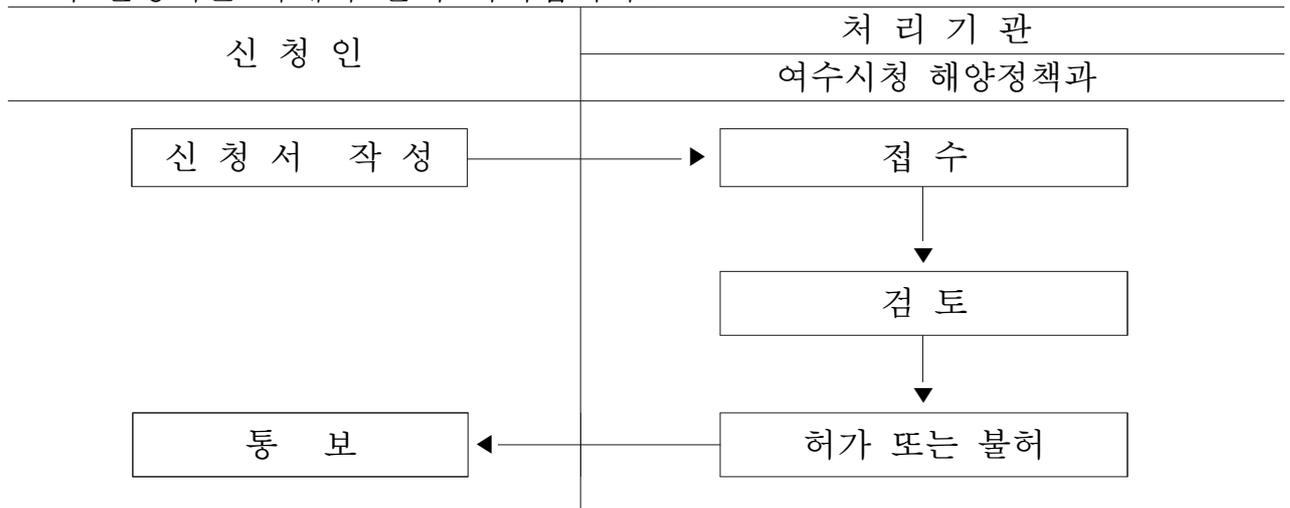
장난감용 불꽃놀이 사용 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이내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사용장소					
사용수량				개	
사용인원					
목적					
사용기간					
사용조건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용료 등) ①해수욕장 시설의 사용요금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 ----- -----	제10조(사용료 등) ①----- -----별표 2 와 같다. ----- ----- -----
제12조(시설사용료 면제)----- ----- 1.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 ----- ----- -----	제12조(시설사용료 면제)----- ----- 1.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 ----- -----
제18조(구성 및 임기) ①----- ----- ②----- 1. ----- 2. ----- 3.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 4. 여수기상대장	제18조(구성 및 임기) ①----- ----- ②----- 1. ----- 2. ----- 3. 여수해양경찰서장 4. 여수기상관측소장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장수 및 자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 월 27 일

여 수 시 장

조성민



여수시 조례 제2173호

붙임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장수 및 자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173호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을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장 총칙</p> <p>제10조(기금의 조성)</p> <p>① (생 략)</p> <p>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 한은 <u>2024년 12월 31일까지</u>로 한다.</p> <p>③ (생 략)</p>	<p>제1장 총칙</p> <p>제10조(기금의 조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2029년 12월 31일</u> <u>까지</u>로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